

#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합니다)의 계약자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중지'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을 유지 중인 경우
2. 제1호 개인실손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현역병으로 입영한 병사(복무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

**【현역병】** 병역법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을 의미하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자의 중지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중지는 이루어집니다. 계약중지일은 입영일 또는 중지 청약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의 계약중지 청약을 받고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중지 확인서'와 '중지지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중지지급금】** 개인실손을 중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중지한 보장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중지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합산액

- ④ 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제2항의 계약중지일부터 회사는 중지한 개인실손 보장종목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중지한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중지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중지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서 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환입하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중지 전 개인실손으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중지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45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중지 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중지 청약철회 신청 시 이미 지급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환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철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계약자가 중지를 청약할 때에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제3조 제16항 및 제17항 포함),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재개'라 합니다)가 계약자가 확인한 재개일에 이루어진다는 점, 계약자가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중지 청약시 청약서에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재개된다는 점, 재개 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회사는 납입최고(독촉)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중지된 실손과 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초과할 경우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실손으로 재개된다는 점, 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경우 재개 승낙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중지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없이 이 특약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제3조(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의 31일 전까지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개예정일 및 보험료 납입 등을 설명하고, 개인실손 재개를 위해 재개일 확정을 요청합니다. 계약자가 확인한 재개일에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제2조에 따라 계약자가 중지 청약시 청약서에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재개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라 개인실손을 중지한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기간 중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자의 재개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재개가 이루어집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지된 개인실손이 특별약관인 경우 그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되면 제1항 따라 중지된 개인실손의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재개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소멸되어도 예외적으로 개인실손 특별약관이 유지되는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의 재개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의 소멸】** ①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에는 ①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함

- ⑤ 회사는 제2항의 재개 청약을 받고, 재개되는 개인실손에 관한 재개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재개보험료】** 계약자가 개인실손을 재개하기 위해 재개 청약일에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① 중지된 개인실손으로 재개시 다음 각 목을 더한 금액을 재개보험료로 합니다.
  - 가.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재개 청약일 직전 갱신일[단, 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가입 청약일(재가입 계약인 경우 재가입일)부터 재개 시점 사이에 갱신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갱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가입 청약일(재가입 계약인 경우 재가입일)]부터 재개 청약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
  - 나.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납입주기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재개 청약일부터 다음 보험료 납입해당월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 ② 재개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시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

- ⑥ 회사는 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중지되었던 개인실손이 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⑦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을 중지된 상태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재개 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
- ⑧ 제7항의 재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날부터 재개예정일까지 남은 날이 31일 이하인 경우, 계약자는 청약 철회에 앞서 재개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 ⑨ 회사는 계약자가 재개를 청약할 때에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제16항 및 제17항 포함), 중지된 실손과 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초과할 경우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실손으로 재개된다는 점, 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경우 재개 승낙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재개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없이 이 특약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 ⑩ 제1항에 따라 재개되는 경우 제9항의 '계약자가 재개를 청약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할 때에'로, '청약 후에는'은 '재개시'로 봅니다. 다만, 재개일 확정 요청시 설명한 내용에 대한 확인은 재개일에 합니다.
- ⑪ 회사는 재개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재개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또한, 회사가 재개의 청약과 함께 재개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재개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재개일을 확정하는 경우 재개일부터 보장이 개시되고, 계약자가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이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회사는 납입최고(독촉)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경우 중지된 개인실손으로 재개됩니다. 다만, 재개 시점 기준으로 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 보장개시일(재가입일 경우 재가입일)로부터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초과한 경우 회사가 재개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재개됩니다. 이때 개인실손의 보장범위 등은 중지된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으며, 회사가 판매중지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재개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가장 최근에 판매한 개인실손을 말함

- 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항 단서에 따라 재개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재개되는 경우 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을 따릅니다.
- ⑮ 제13항의 단서에 따라 보장이 개시되면, 그 시점부터 제2조에 따라 중지된 개인실손은 소멸합니다.
- ⑯ 회사는 재개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 또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등을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재개 청약을 승낙합니다.
  - 1. 보장종목
  - 2. 보험가입금액
  - 3. 자기부담금
  - 4.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 ⑰ 회사는 제16항 각 호에 대하여 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타 사항)**

- ① 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 전 알릴의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재개되는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 ② 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합니다),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은 재개되는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특약의 경우 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가입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④ 제2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지 전 개인실손의 약관을,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각각 따릅니다.
- ⑤ 제3조에 따라 개인실손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복무 중인 경우 다시 제2조에 따라 계약자는 중지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조에 따라 중지 청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중지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라 개인실손 중지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제3조에 따라 개인실손의 재개 후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근무무와 무관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